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7.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태형 의원 외 6명(이성순, 배지훈, 배용식, 홍복조, 윤권근, 박정환)
- 발의일자: 2020. 10. 15.
- 회부일자: 2020. 10. 16.
- 상정: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8.)
- 의결: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2. 17.)

2.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2)
-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안 6조의2)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7조)

-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 (안 제8조제5항)
-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 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관련 법령 등)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2020. 10. 15. ~ 10. 26.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이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안 제2조제3호 재위탁의 정의에 있어 위탁기간 중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경우는 재위탁에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 안 제4조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나열함에 있어 제4호의 “주민 생활과 직결 된” 문구에 대해 논의 필요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2항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수탁자 모집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안 제7조(의회의 동의)는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6조의2(재계약) 뒷쪽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

※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1.2.10. 선고2010추11)

-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2018.11.19.) 된 의안번호 제2018-437호(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민간위탁을 준비단계, 진행진행, 이후단계 3단계로 분류
- 위탁 준비단계 : 민간위탁 적정여부검토, 추진계획수립, 지방의회 동의
 - 위탁 진행단계 :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위탁 이후단계 : 사후관리 · 감독, 재계약 · 재위탁

※ 최민수교수(국회의정연구원) 질의응답

- 구청장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특정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못하고 직접 수행해야 함.
- 특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여부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수탁기관 선정 작업과 수탁기관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 만약,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의회에서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미리 선정된 수탁기관과 법적분쟁 발생과 수탁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단체 등은 원인무효 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실무직원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되는 것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작업과 수탁기관 자격 심사 준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결재를 통한 업무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7조(의회의 동의)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하여 의회의 동의를 매번 받도록 하는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재계약에 대한 불안정으로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

※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0. 9월)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제4항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와 관련 논의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그리고 다수의 조문에 집행부의 수정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 안 제5조제2항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수탁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며 또한 범죄경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됨.
- 안 제7조의 의회의 동의는 의회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 선정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선정된 수탁기관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안 제6조의2와 안 제7조에 따르면 재계약 및 재위탁 시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 동의를 마치고 성과평가까지도 모두 끝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많음.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위원회 수정안: 붙임 참조

[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3호 중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적”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한다.

4. 그 밖의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5조”를 “제1항”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8항 중 “지원에게는”을 “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지원의 제척 사유 등은”으로,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기관이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일부를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 중 “9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 ·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 수정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재위탁”이란 <u>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u>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 <u>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 .</u>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u>그 기간을 연장하여다시 계약하는 것을</u> 말한다.	4. ----- ----- ----- <u>다시 ----- .</u>
제3조(적용범위) <u>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u>	제3조(적용범위) <u>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 ----- ----- ----- ----- ----- .

1. ~ 3. (생 략)

4. 그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

-- 정기적 · 종합적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

-----.

1. ~ 7.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

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상근근무자

는 타기관의 겸임을 금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사무위탁을 신청한 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신 설>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

----- 제9조 -----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

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1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하 단위로 계약하는 연

-----.
-----.

<삭 제>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례 반복적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추진 필
요성 및 기대효과

3. 위탁사무 범위 ·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자격 제한 시,
그 사유)

6. 수탁기관의 수입 · 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
한 사항

③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
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
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
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p><u>제8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u> ① ~</p> <p>④ (생 략)</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1.~ 3. (생 략)</p> <p>4. <u>제5조</u>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총 족 여부</p> <p>5. (생 략)</p> <p>⑥ · ⑦ (생 략)</p> <p>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u>위원에 게는</u>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u> ① ~</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 ----- -----.</p> <p>1.~ 3. (개정안과 같음)</p> <p>4. <u>제8조</u> ----- -----</p> <p>5. (개정안과 같음)</p> <p>⑥ · ⑦ (개정안과 같음)</p> <p>⑧ ----- <u>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 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 --- 따른다.</u></p>
<p><u>제9조(계약의 체결 등)</u>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 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u>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 략)</p>	<p><u>제10조(계약의 체결 등)</u> ① ----- ----- ----- <u>체결 하여야 ----- -----.</u></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u>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u> ① ~ ③</p> <p>(생 략)</p> <p>④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단서 신 설></p>	<p><u>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u> ① ~ ③</p> <p>(개정안과 같음)</p> <p>④ ----- ----- ----- <u>.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u></p>

<신 설>

7조제5항에 따른 전대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이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일부를 전대할 경우 사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1조 (생 략)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탁기관이 제10조에 규정한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
한 때

3. 제13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
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3조(지휘·감독) ① · ② (생
らく)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 (생 략)

제12조 (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제10조-----
-----.

1. (개정안과 같음)

2. ----- 제11조-----

--

3. 제14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지휘·감독) ① · ② (개정안
과 같음)

③ 제13조제3항-----
-----.

제15조 (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16조(성과평가) ① -----

-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

-----.
----- 경우 또
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
은 경우에는 --- 받은 것으로 본
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 ·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 한다.

<신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후 -----

<삭 제>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와 같음)